

심 사 보 고 서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753 |
|----------|-----|

2024. 11. 25.(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24년 10월 24일
- 다.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4일
- 라. 상정일자 : 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 11월 19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조경순 투자유치국장)

가. 제안이유

- 중앙정부(기획재정부)는 관 주도의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과 민간자본 그리고 금융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도를 도입함
-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신청하여 전국 제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바,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⁷⁾ 자본금 의무 출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7) SPC는 Special Purpose Company의 약자로 특수목적법인(회사)을 뜻함. 일반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은 대부분 모회사가 있으며, 어떤 회사 또는 집단들이 자기의 채무상태나 법률 관계 등과 독립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인(회사)를 만들어 이용하는 형태. 특정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새롭게 설립됨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투자하고 싶은 사업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고, 특수목적법인(SPC)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자금을 투자받는 데 유리할 수 있음

나. 주요내용

○ 출자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 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 자금 또는 내부 자금을 직접적으로 출자한 대상
 2. 제1호와 유사한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출자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 ① 도와 군은 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도와 군의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도는 법인 설립자본금에 일정 부분 출자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서 출자비율은 도와 군의 합산 비율이며, 도와 군의 분담비율은 협의에 의해 정한다.
- ④ 법인이 증자할 경우, 도와 군은 출자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⑤ 도와 군은 필요한 경우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 출자대상 : 단양역 관광단지 주식회사
- 출자총액 : 136억원(지자체 11.5, 철도공단 3, 민간 76.62, 자펀드 44.88)
- 출자금액 : **250,000천원(충청북도)**
- 출자규모 : 지자체(광역+기초)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8% 이상 의무 출자**

| | | | | |
|-----------------|---|--|---|--|
| ① 총사업비 680억원 | ⇒ | ② SPC 자본금 (총사업비 20% 이상) 136억원 ^{20%} | ⇒ | ③ 도-시군 출자예상액 (SPC 자본금 8% 이상 의무 출자) 11.5억원 ^{8.46%} (도 2.5, 단양 9) |
|-----------------|---|--|---|--|

- ① 총사업비는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 재심사를 통해 확정 예정(11월 중)
- ② SPC 자본금 비율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나, **HUG 특례보증 활용 및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총사업비의 20%(136억원)로 비율 상향**
- ③ **지자체는 보통주 출자가 필수**이며, **출자 예상금액은 SPC 전체 자본금의 8.46%(11.5억원) 규모**(출자금은 향후 원금 회수 가능)

- 출자시기 : 2025년 1~2월 중
- 출자기간 : 2025년 ~ 2055년 (30년)

[사업 개요]

- 사업명 :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 2027년
- 위치 : 단양군 단양읍 중도리 2-24번지 일원
- 총사업비 : 680억원(SPC 자본금 136, 타인자본 544)

| 자본금(136억원) | | | | 대출금(544억원) | |
|--------------------------------|------|---------|----------------|--------------|----------|
| 보통주 | | | 우선주 | | |
| 지자체 | 철도공단 | 민간컨소시엄 | 지역활성화 자펀드 | 지역활성화 자펀드 | 금융권 대출 |
| 11.5억원 (도 2.5, 단양 9) | 3억원 | 76.62억원 | 44.88억원 | 91.12억원 | 452.88억원 |
| 1.7% | 0.4% | 11.3% | (총 조달금액 중) 20% | | 66.6% |

- 사업규모 : 51,842㎡(약 15,700평)
- 사업주체 : 충청북도, 단양군,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국가철도공단, 신홍에이앤디(주) 컨소시엄(6개사) 등
- 사업내용 : 케이블카, 미디어아트터널, 전망대 카페, 유원지 주차장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24.1.16.시행)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자펀드 결성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지방자치단체도 출자가 가능하게 되었음
-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신청하여 전국 제1호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의무 출자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⁸⁾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⁹⁾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주 출자가 필수이며,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¹⁰⁾」에 근거하여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136억원)의 8% 이상을 의무로 출자해야 함에 따라 본 동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자본금 출자액 11.5억원(약 8.46% / 도 2.5, 단양군 9) 중 충청북도 부담분 2.5억 출자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심사에는 출자 동의 여부만 심의하고 출자금은 2025년 본예산에 계상할 예정임
- 아울러,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비율은 총사업비(680억원)의 10%(68억원) 이상을 충족하면 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특례보증 활용 및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총사업비의 20%(136억원)로 상향하였으며,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제44조의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출자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0)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4. 8. 9.] 제4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도와 군은 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와 군의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도는 법인 설립자본금에 일정 부분 출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출자비율은 도와 군의 합산 비율이며, 도와 군의 부담비율은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④ 법인이 증자할 경우, 도와 군은 출자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⑤ 도와 군은 필요한 경우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향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검토를 통해 11월경 특례보증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 이에 따라 본 자본금 출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특례보증의 세부내용 및 보증결정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임
- 본 펀드로 추진 예정인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680억으로 단양역 인근 폐철도 부지를 케이블카, 미디어아트 터널, 전망대 카페 등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관광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단양군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신규 관광객 유입과 지역주민 고용 창출 등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향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을 투자펀드 성공 모델로 제시하여 민간 투자 및 지역개발 수요 자극을 통해 도내 지역별 다양한 사업이 발굴·추진되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동력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본 출자동의안을 승인함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

| | |
|--------------|----------------|
| 의안번호 | 제753호 |
| 의 결 연 월 일 | 년 월 일 (제 회) |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

| | |
|-------|---------------|
|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 제출연월일 | 2024년 10월 24일 |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753

제출연월일 : 2024년 10월 2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중앙정부(기획재정부)는 관 주도의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재정과 민간자본 그리고 금융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도를 도입함
- 이에 충청북도에서는『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신청하여 전국 제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바,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의무 출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자대상 : 단양역 관광단지 주식회사
- 출자총액 : 136억원(지자체 11.5, 철도공단 3, 민간 76.62, 자펀드 44.88)
- 출자금액 : 250,000천원
- 출자규모 : 지자체(광역+기초)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8% 이상 의무 출자

| | | | | |
|------------------|---|--------------------------------------|---|--|
| ① 총 사업비 680억원 | ⇒ | ② SPC 자본금 (총 사업비 20% 이상) 136억원 | ⇒ | ③ 도-시군 출자예상액 (자본금 8% 이상 의무 출자) 11.5억원 (도 2.5, 단양 9) |
|------------------|---|--------------------------------------|---|--|

| |
|--|
| ① 총 사업비는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 재심사를 통해 확정 예정(11월 중) |
| ② SPC 자본금 비율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나, HUG 특례보증 활용 및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총 사업비의 20%로 비율 상향 |
| ③ 지자체는 보통주 출자가 필수이며, 출자 예상금액은 SPC 전체 자본금의 8.46% 규모임(출자금은 향후 원금 회수 가능) |

- 출자시기 : 2025. 1. ~ 2월 중
- 출자기간 : 2025년 ~ 2055년 (30년)

3. 사업개요

- 사업명 :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 2027년
- 위치 : 단양군 단양읍 중도리 2-24번지 일원
- 총사업비 : 680억원(SPC 자본금 136, 타인자본 544)

| 자본금(136억원) | | | 대출금(544억원) | | |
|-------------------------|------|---------|----------------|--------------|----------|
| 보통주 | | 우선주 | | | |
| 지자체 | 철도공단 | 민간컨소시엄 | 지역활성화 자펀드 | 지역활성화 자펀드 | 금융권 대출 |
| 11.5억원 (도 2.5, 단양 9) | 3억원 | 76.62억원 | 44.88억원 | 91.12억원 | 452.88억원 |
| 1.7% | 0.4% | 11.3% | (총 조달금액 중) 20% | | 66.6% |

- 사업규모 : 51,842m²(약 15,700평)
- 사업주체 : 충청북도, 단양군,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국가철도공단, 신흥에이앤디(주) 컨소시엄(6개사) 등
- 사업내용 : 케이블카, 미디어아트터널, 전망대 카페, 유원지 주차장 등

4. 출자의 필요성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공공자금을 마중물로 제공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중앙 또는 지자체의 재원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대규모 프로젝트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은 단양역 인근 폐철도 부지를 케이블카, 미디어아트터널 등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관광산업을 주력으로 육성하는 단양군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신규 관광객 유입과 지역 주민 고용 등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향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을 투자펀드 성공 모델로 제시하여 민간 투자 및 지역개발 수요 자극을 통해 도내 지역별 다양한 사업이 발굴·추진되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 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 자금 또는 내부 자금을 직접적으로 출자한 대상
 2. 제1호와 유사한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출자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도와 군은 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도와 군의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도는 법인 설립자본금에 일정 부분 출자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서 출자비율은 도와 군의 합산 비율이며, 도와 군의 분담비율은 협의에 의해 정한다.
- ④ 법인이 증자할 경우, 도와 군은 출자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⑤ 도와 군은 필요한 경우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